

# 물질안전보건자료

<del>무럭되지 한다</del> MSDS 번호 : AA00740-0000000570

#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 : HANSU S-370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:

○ 권고 용도 : 18.1 부식방지제 (개방 냉각수계 부식방지제)

○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 :

○ 공급회사명 : 주식회사 한수 (기술제휴, KURITA WATER INDUSTRIES, 일본)

○ 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5번길 44

○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: (대표, 안산) 031-492-7800 ○ 담당부서 : (주)한수 종합연구소 (Tel. : 031-491-7641)

#### 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 : 해당없음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 : 해당없음 ○ 신호어 : 해당없음

○ 유해·위험 문구 : 해당없음 ○ 예방조치문구 : 해당없음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- 자료없음

#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번호	함유량(%)
Sodium metaphosphate	Metaphosphoric acid (H6P6018), hexasodium salt	10124-56-8	20 ~ 30
WATER	디수소 산화물(DIHYDROGEN OXIDE)	7732-18-5	70 ~ 80

#### 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 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 내시오.
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.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

다. 흡입했을 때 : 동하시오.
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
라. 먹었을 때 : 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
-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#### 5.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- 분말소화제, 탄산가스, 일반 포말소화제, 분무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 시오.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-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- 화재시 자극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
-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
- 일부 액체는 현기증,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
- 다.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.
-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.
-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진화 방법을 찾아 사용하시오.
-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.

##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 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구 :
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.
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 과)에 신고하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줄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줄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다.정화 또는 제거방법: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  - 소량 누출 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  - 용매를 닦아내시오.

##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
가. 안전취급요령 : 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

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오.
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 : 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
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.국내노출 기준 : 해당없음 .ACGIH노출기준 : 해당없음 .생물학적 노출기준 : 해당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기를 권장함

#### 다. 개인 보호구

- 호흡기 보호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)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 화합물용)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 크를 착용할 것.
- 눈 보호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- 손 보호

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 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
○ 신체 보호

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 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##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특성

가. 외관 나. 냄새 무색 또는 미황색 액체

무취

다. 냄새 역치 자료없음

라. pH 5.3 ± 1.0(원액)

마. 녹는점/어는점 Sodium Hexametaphosphate : 628℃

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
 자료없음

 사. 인화점
 해당없음

 아. 증발 속도
 자료없음

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
 해당없음
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폭발가능성 없음

카. 증기압 자료없음

다. 용해도 임의의 농도로 용해

파.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. 비중 1.22 ± 0.05 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.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더.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. 점도 자료없음

머. 분자량 Na6018P6(611.77)

##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.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
나.피해야 할 조건

.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 다. 피해야 할 물질 : 자료없음
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 자료없음

##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○ 호흡기 : 자료없음 ○ 경구 : 자료없음 ○ 눈, 피부 : 자료없음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○ 급성 독성

- ATE MIX : >5000mg/kg

- 경구 독성 : - [Water] : LD50 > 90000 mg/kg Rat (KOSHA)

- [Sodium metaphosphate] : LD50 6200 mg/kg Rat (NLM, TOMES)

- 경피 독성 : - 자료없음 - 흡입 독성 : - 자료없음

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 ro ::...

성 :

[Sodium metaphosphate] : 토끼 - 비자극 (GLP, ECHA)

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

O B전 로 드용 포트 시 [Sodium metaphosphate] : 토끼 - 비자극 (GLP, ECHA) 극성 :

○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 ○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
○ 발암성 :

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
NTP: 해당없음 IARC: 해당없음 OSHA: 해당없음 EU CLP: 해당없음 ACGIH: 해당없음
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 ○ 생식독성 : 자료없음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

<sup>l</sup> 자료없음

회 노출) :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

(반복 노출):

○ 흡인유해성 : 자료없음

○ 고용노동부고시 :

.발암성 해당없음 .생식세포변이원성 해당없음 .생식독성 해당없음

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 :

○ 어류 : 자료없음 ○ 갑각류 : 자료없음 ○ 조류 : 자료없음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○ 잔류성 :

- [Water] : log Kow = -1.38

○ 분해성 : 자료없음 다. 생물 농축성

○ 생물 농축성 : 자료없음 ○ 생분해성 : 자료없음 라. 토양 이동성 : 자료없음 마. 오존층 유해성 : 해당없음 바. 기타 유해 영향 : 자료없음

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

가. 폐기방법 : 음.
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
- 소각 처리할 것.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

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

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##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나. 폐기시 주의사항 :

가. 유엔 번호 : 자료없음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자료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자료없음

라. 용기등급 : 자료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.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 .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 .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 .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

# 15. 법적 규제현황

10. B 1 // AIC 8			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			
○ 작업환경측정물질	해당없음		
○ 노출기준설정물질	해당없음		
○ 관리대상유해물질	해당없음		
O 특별관리대상물질	해당없음		
○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	해당없음		
○ 제조등금지물질	해당없음		
○ 허가대상물질	해당없음		
○ PSM대상물질	해당없음		
O 허용기준설정물질	해당없음		
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			
○ 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	해당없음		
O 중점관리물질	해당없음		
O CMR(발암성, 생식세포변이원성, 생식독	71151010		
성) 및 CMR 우려 물질	해당없음		
다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			
○ 유독물질	해당없음		
○ 개 Te E ○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	해당없음		
○ 사고대비물질	해당없음		
○ 제한물질	해당없음		
○ 허가물질	해당없음		
○ 금지물질	해당없음		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	해당없음		
THE PROPERTY OF THE TANK	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		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	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		
	당됨.		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			
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- .확정분류 결과 : 미분류
- 미국관리정보

OSHA 규정(29CFR1910.119)

: 해당없음

CERCLA 규정 103 규정(40CFR302.4)

: [Sodium metaphosphate] : 2267.995 kg 5000 lb

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
: 해당없음

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
: 해당없음

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
- : 해당없음
- 로테르담협약물질
- : 해당없음
- 스톡홀름협약물질

: 해당없음

○ 몬트리올의정서물질

: 해당없음

# 16. 기타 참고사항

# 가. 자료의 출처 :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(화학물질의 분류•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
- 본 MSDS는 KOSHA, NITE, ECHA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 일자 : 1996.05.06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: 13, 2023.03.22

라. 기타(자료번호) : MS-CW153